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06081 가맹지사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태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한
담당변호사 김윤희, 김태관, 김현희, 이동성, 이강하
변 론 종 결 2022. 7. 14.
판 결 선 고 2022. 8.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은 'E'이라는 상호의 요식업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2021. 1. 11.경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20. 7.경부터 'F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주이다.

나. 원고는 2020. 9. 6. 소외회사가 설립되기 전 피고 C과의 사이에 원고가 E의 대구지사를 맡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지사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지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대구 수성구 G상가 빌딩 중 1층(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을 임차하여 인테리어를 한 후 2021. 3. 10.경부터 E 식당을 운영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대구 지역에서 'E' 가맹이 성공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가맹지사 계약을 체결 당시 원고에게 "대구에는 E 가맹점할 사람이 많다. 잘 될 것이다. 도와주겠으니 잘 해보자"라고 말하며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를 믿은 원고는 이 사건 가맹지사 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비 등으로 피고들에게 합계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의 기망행위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지출한 합계 9,000만 원을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들이 이 사건 가맹지사계약을 체결할 원고에게 당시 '대구에는 E 가맹점할 사람이 많다. 사업이 잘 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이러한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맹지사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가맹사업의 수익성이나 전망 등에 관하여 다소 과장된 설명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위법성을 인정할 정도의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봉수